

# 2020년 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

2020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「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지정·고시하고,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2일

김 해 시 장



1. 사방지 지정 사유 : 2020년 추가 사방사업 시행
2. 사방지 지정 내역 및 도면 : 붙임 참조
3. 지정사업의 종류 : 사방사업(계류보전, 산지사방)
4. 행위제한
  - 사방지 안에서의 입목·죽의 벌채, 토석·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, 가축의 방목, 그 밖의 사방시설을 훼손·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5. 열람 및 문의사항
  - 사방지 고시 도면은 김해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  -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 산림과 산림보호팀 (☎055-330-44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사방지 지정 내역 1부.  
2. 사방지 지정 구역 도면 1부. 끝.